

다시 뛰는
공정도시
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788호
2022. 6. 17.(금)



목 차

◆ 공 고

제2022-1795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-1795호

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특별시공고 제2021-1667호)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.

2022년 6월 17일
서울특별시

1. 지정지역 : 서울특별시 강남구, 송파구 일원 14.4km²

대상지역			면적(km ²)	비 고
합 계			14.4	
서울특별시	강남구	청담동, 삼성동, 대치동	9.2	대상지역 내 모든 토지
	송파구	잠실동	5.2	

2. 지정기간 : 2022년 6월 23일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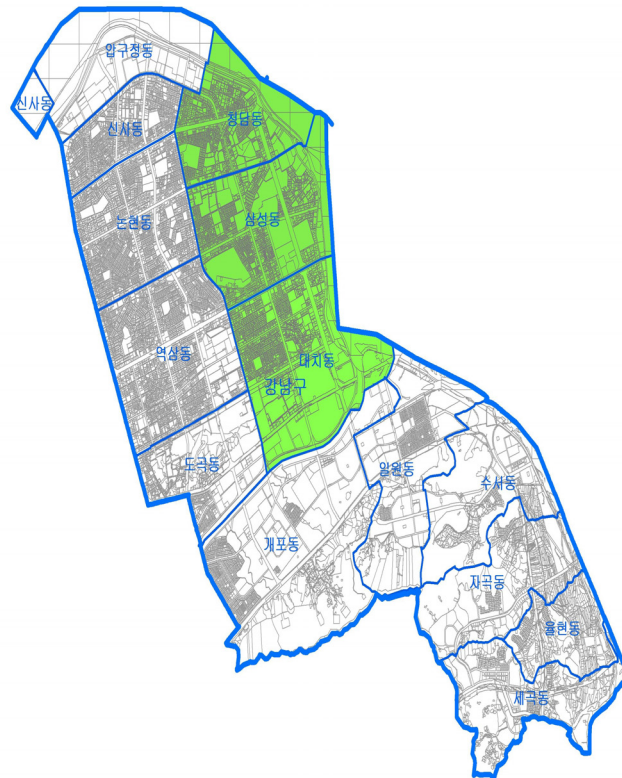
4.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

*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

별첨1

지역별 세부 지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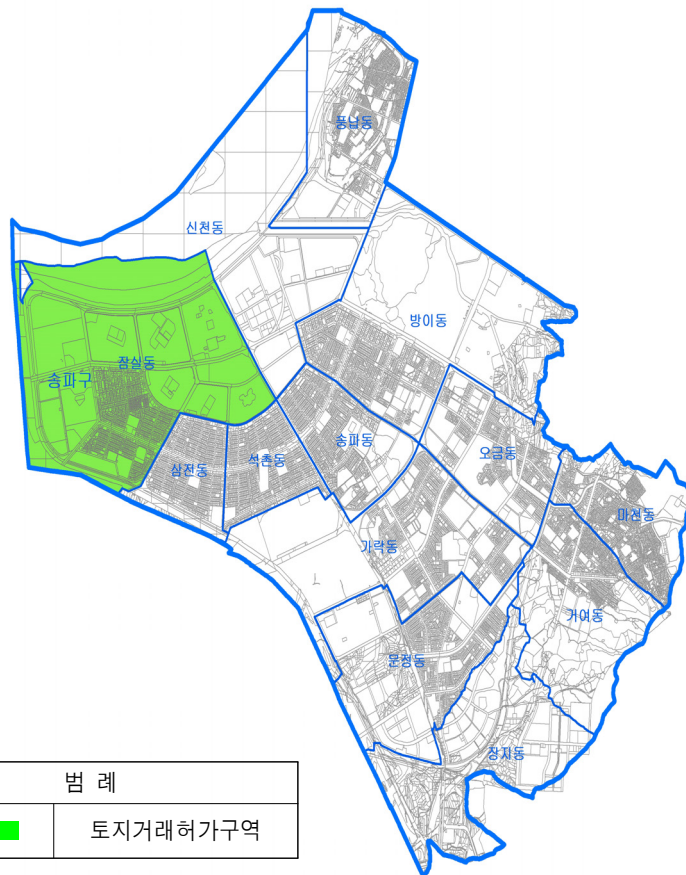
○ 서울 강남구 (재지정)



범 례	
토지거래허가구역	

청담동(2.3km²), 삼성동(3.2km²), 대치동(3.7km²)

○ 서울 송파구 (재지정)



잠실동 (5.2km²)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